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5. 11 선고 2022가단1205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(담당변호사 김승민)

변 론 종 결 2023. 4. 13.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8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2. 8. 19. 접수 제51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, 원고 B은 망 E과 원고 A 사이의 자녀, FD는 망 E과 G 사이의 자녀들이다.

나.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는데, 원고 A은 ‘공동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한 상속세에 관한 사전구상금청구권 중 일부’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1042), 2018. 9. 14. 이 사건 부동산에 ‘청구금액 9,200만 원, 채권자 원고 A’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’라 한다).

다. 원고들은 ‘FD를 대신하여 상속세를 초과 납부하였음’을 이유로 F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, 제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“① 원고 A에게, F는 104,930,025원, D는 117,123,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② 원고 B에게, F는 19,001,623원, D는 21,207,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하였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가합600536 판결). FD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(서울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나2046675 판결), 위 제1심 판결은 2022. 8. 12.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, 피고는 D의 고용주인데, D와 사이에 2022. 8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‘매매대금 1억 3,000만 원’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날 D에게 매매대금 1억 3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 D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자 그 중 9,200만 원을 천안지원 공탁소에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즉시 납입하여 같은 날(2022. 8. 16.) 공탁이 수리되었다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 제2359호).

마. 이어 D는 해방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해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8. 19.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1314호), 이 사건 가압류는 같은 날(2022. 8.

19.) ‘2022. 8. 18. 집행취소결정’을 이유로 말소되었다.

바. 원고 A은 2022. 9. 7.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’을 받아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타채114314) 2022. 9. 15. 92,006,411원을 추심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16 내지 23호증 · 을 제2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

가. 원고들의 주장

D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,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요양원 사업을 위하여 적절한 토지를 물색 중이었고, D는 202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는데, 피고의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다. 다만 이 사건 가압류가 문제되었으나 D가 “다른 채무는 없고 가압류는 계약 체결시 해결하면 된다”라고 설명하여, 피고는 2022. 5. 31. D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9,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. 그러나 매매대금에 이견이 있어 피고는 2022. 8. 14. D로부터 9,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나, 이후 매매대금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가압류의 말소를 전제로 2022. 8. 16.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. 결국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로서 시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3. 판 단

가.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

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,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).

나. 그런데 원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-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고 보이고(을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), 피고 역시 실제로 요양원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인다(을 제6호증 ‘노인요양원 & 계획서’).
-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압류(청구금액 9,200만 원) 이외에는 압류가압류, 근저당권 설정 등 D의 다른 채무를 추단계 할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을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만 해결된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, 실제로 피고는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실제로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았다.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“가압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당시 D의 무자력 상황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”라고 주장하나, 등기부상 가압류가 남아있는 것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이외에도 다종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단지 가압류등기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D의 무자력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
- 비록 피고가 D의 고용주이기는 하나, D가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상황 내지 원고들과의 소송 진행 경과를 자세히 밝혔다고 볼 어떠한 증거나 사정이 없고,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는 원고들 이외에는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. 한편, 2021년경 D에게 이 사건 가압류상 청구금액이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적인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는바, 제3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D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9,2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고 보인다.
- 한편,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9,200만 원은 실제로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

사용되어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는바,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는 이익을 실제로 누렸다. 나아가, 만약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적인 압류를 하였다면, 그 압류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부동산의 부담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통해 추가 변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인다.

-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역시 D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이고,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어야 할 특별한 동기나 경위를 찾아볼 수도 없다.

다. 따라서, 이와 달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하상익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아산시 H 전 87㎡
2. 아산시 I 전 3㎡
3. 아산시 J 전 321㎡
4. 아산시 K 전 179㎡ 끝.

